

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6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27.

최두임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7. 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7. 16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최두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·연구기관, 각종 단체·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2)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(안 제4조 및 제5조)
- 3) 군의회 보고(안 제6조)
- 4) 사후관리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4호
 - 예고기간: 2025. 6. 27.(금) ~ 7. 3.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제안이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업무협약의 체결, 변경, 해지 시 지방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, 협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을 기록·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~제2조) 조례의 목적에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- (안 제3조)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,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에 소요 예산 등 제반 사항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~제5조)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 사업과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) 군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군의회에 의원 월례회를 통한 사전 보고와 체결 이후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7조)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연 1회 이상 점검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체결, 변경, 해지 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, 협약 체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